

# 포항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액이 당초 281,383,130,000원 에서 283,011,260,000원 으로 증액되어 정정공고 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포항 IPARK」 사이버 건본주택(<https://www.i-park.com/pohang>)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의해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 방문예약은 홈페이지(<https://www.i-park.com/pohang>)로 예약 접수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 건본주택 입장 전 및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포항 IPARK」는 분양상담전화(☎ 054-275-9939)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일 내방객 제한 및 사전관람예약 신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운영하며 예약을 통한 일일 내방객을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건본주택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 및 당첨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건본주택 사전 관람                    |                               | 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및 사전서류접수  |                               |
|----|-------------------------------|-------------------------------|-------------------------------|-------------------------------|
|    | 예약 신청 기간                      | 관람 가능 기간                      | 예약 신청 기간                      | 제출 가능 기간                      |
| 일정 | 2021.10.25.(월)~2021.11.06.(토) | 2021.10.29.(금)~2021.11.07.(일) | 2021.11.16.(화)~2021.11.26.(금) | 2021.11.19.(금)~2021.11.27.(토) |

- ※ 예약신청 과밀에 따라 예약신청 기간 중이라도 초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신청 접수는 불가합니다. 또한 예약신청은 홈페이지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신청은 불가합니다.
- ※ 건본주택 관람 편의 및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건본주택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남구·읍·면 지역 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포항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9.)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초)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거주제한기간이 없는 경우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입국하여 국내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일반공급   |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단, 철거민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필요 / 1순위 조건<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필요 / 1순위 조건<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필요 / 1순위 조건<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필요<br>(2순위)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통장을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통장가입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예치금액 미충족)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할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6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park.com/pohang)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추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6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6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거래 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동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br>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정 | 2021.11.08.(월)  | 2021.11.09.(화)  | 2021.11.10.(수)  | 2021.11.16.(화)                              | 2021.11.29.(월)~2021.12.03.(금) |
| 방법 | 인터넷청약<br>(09:00~17:30)  |   |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 건본주택 방문<br>(10:00~16:00)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 "청약홈"</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 "청약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 "청약홈"</li> </ul> | 포항 아이파크 건본주택<br>(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11)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9.27.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2021.10.29.)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공동주택과-33455호(2021.10.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360-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총 1,1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5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09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1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20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4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77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br>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지분 | 총공급<br>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분양<br>세대수 | 저층<br>우선배정<br>세대수 |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계         |             |                   |
| 민영<br>주택 | 2021000736 | 01 | 075.9101        | 75       | 75.9101                 | 24.6927    | 100.6028 | 42.9468                | 143.5496 | 35.7335     | 169        | 17           | 17         | 34         | 5          | 12        | 85        | 84          | 6                 |
|          |            | 02 | 084.5134A       | 84A      | 84.5134                 | 26.1444    | 110.6578 | 47.8139                | 158.4717 | 39.7834     | 754        | 75           | 75         | 151        | 23         | 53        | 377       | 377         | 28                |
|          |            | 03 | 084.9827B       | 84B      | 84.9827                 | 26.6871    | 111.6698 | 48.0797                | 159.7495 | 40.0043     | 98         | 10           | 10         | 20         | 3          | 7         | 50        | 48          | 4                 |
|          |            | 04 | 084.9913C       | 84C      | 84.9913                 | 26.7881    | 111.7794 | 48.0846                | 159.8640 | 40.0083     | 73         | 7            | 7          | 15         | 2          | 5         | 36        | 37          | 3                 |
|          |            | 05 | 101.6515        | 101      | 101.6515                | 31.2636    | 132.9151 | 57.5103                | 190.4254 | 47.8509     | 50         | 0            | 5          | 0          | 1          | 0         | 6         | 44          | 2                 |
|          | 합 계        |    |                 |          |                         |            |          |                        |          |             |            | <b>1,144</b> | <b>109</b> | <b>114</b> | <b>220</b> | <b>34</b> | <b>77</b> | <b>554</b>  | <b>590</b>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별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오차면적은 각단지의 특정 세대에 합산하여 등기 시 등재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계획 변경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럭,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지분면적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sup>2</sup>) 까지 표현되며 (면적산출근거에 의해 소수점5째 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4째자리 (소수5째 자리에서 버림처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로 0.0001m<sup>2</sup> 만큼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점 4째자리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43세대)는 총 1,144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무작위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sup>2</sup>, 세대, 원, VAT포함)

| 주택형<br>(약식) | 공 급<br>세대수 | 동·라인별   | 층구분    | 해 당<br>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br>(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            |   |        |            |             |             |            |             | 계약시        | 계약후 30일내   | 2022.03.15. | 2022.08.16. | 2023.01.16. | 2023.07.17. | 2023.10.16. | 2024.01.15. |             |
| 75          | 169        | 104동 5,6호<br>106동 1,2호<br>107동 1,2호   | 1층     | 1          | 85,760,400  | 220,439,600 |            | 306,200,000 | 10,000,000 | 20,620,000 | 30,620,000  | 30,620,000  | 30,620,000  | 30,620,000  | 30,620,000  | 30,620,000  | 91,860,000  |
|             |            |   | 2층     | 6          | 85,760,400  | 226,339,600 |            | 312,100,000 | 10,000,000 | 21,210,000 | 31,210,000  | 31,210,000  | 31,210,000  | 31,210,000  | 31,210,000  | 31,210,000  | 93,630,000  |
|             |            |   | 3~4층   | 12         | 85,760,400  | 230,039,600 |            | 315,800,000 | 10,000,000 | 21,580,000 | 31,580,000  | 31,580,000  | 31,580,000  | 31,580,000  | 31,580,000  | 31,580,000  | 94,740,000  |
|             |            |   | 5~9층   | 30         | 85,760,400  | 232,139,600 |            | 317,900,000 | 10,000,000 | 21,790,000 | 31,790,000  | 31,790,000  | 31,790,000  | 31,790,000  | 31,790,000  | 31,790,000  | 95,370,000  |
|             |            |   | 10층 이상 | 120        | 85,760,400  | 234,139,600 |            | 319,900,000 | 10,000,000 | 21,990,000 | 31,990,000  | 31,990,000  | 31,990,000  | 31,990,000  | 31,990,000  | 31,990,000  | 95,970,000  |
| 84A         | 754        | 101동,102동,103동<br>1,2,3,5,6호<br>104동 1,3,4호<br>105동 1,2,3,5호<br>106동,107동 3호<br>108동 1,2,3,4호 | 1층     | 9          | 95,480,160  | 244,319,840 |            | 339,800,000 | 10,000,000 | 23,980,000 | 33,980,000  | 33,980,000  | 33,980,000  | 33,980,000  | 33,980,000  | 33,980,000  | 101,940,000 |
|             |            |   | 2층     | 28         | 95,480,160  | 250,919,840 |            | 346,400,000 | 10,000,000 | 2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103,920,000 |
|             |            |   | 3~4층   | 56         | 95,480,160  | 255,219,840 |            | 350,700,000 | 10,000,000 | 25,070,000 | 35,070,000  | 35,070,000  | 35,070,000  | 35,070,000  | 35,070,000  | 35,070,000  | 105,210,000 |
|             |            |   | 5~9층   | 140        | 95,480,160  | 256,219,840 |            | 351,700,000 | 10,000,000 | 25,170,000 | 35,170,000  | 35,170,000  | 35,170,000  | 35,170,000  | 35,170,000  | 35,170,000  | 105,510,000 |
|             |            |   | 10층 이상 | 521        | 95,480,160  | 257,519,840 |            | 353,000,000 | 10,000,000 | 25,300,000 | 35,300,000  | 35,300,000  | 35,300,000  | 35,300,000  | 35,300,000  | 35,300,000  | 105,900,000 |
| 84B         | 98         | 104동 2호<br>105동 4호<br>106동 4호<br>107동 4호  | 1층     | 3          | 96,010,320  | 236,789,680 |            | 332,800,000 | 10,000,000 | 23,280,000 | 33,280,000  | 33,280,000  | 33,280,000  | 33,280,000  | 33,280,000  | 33,280,000  | 99,840,000  |
|             |            |   | 2층     | 4          | 96,010,320  | 243,089,680 |            | 339,100,000 | 10,000,000 | 23,910,000 | 33,910,000  | 33,910,000  | 33,910,000  | 33,910,000  | 33,910,000  | 33,910,000  | 101,730,000 |
|             |            |   | 3~4층   | 8          | 96,010,320  | 247,089,680 |            | 343,100,000 | 10,000,000 | 24,310,000 | 34,310,000  | 34,310,000  | 34,310,000  | 34,310,000  | 34,310,000  | 34,310,000  | 102,930,000 |
|             |            |   | 5~9층   | 20         | 96,010,320  | 250,389,680 |            | 346,400,000 | 10,000,000 | 2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103,920,000 |
|             |            |   | 10층 이상 | 63         | 96,010,320  | 253,589,680 |            | 349,600,000 | 10,000,000 | 24,960,000 | 34,960,000  | 34,960,000  | 34,960,000  | 34,960,000  | 34,960,000  | 34,960,000  | 104,880,000 |
| 84C         | 73         | 101동 4호<br>102동 4호<br>103동 4호   | 1층     | 3          | 96,019,920  | 237,080,080 |            | 333,100,000 | 10,000,000 | 23,310,000 | 33,310,000  | 33,310,000  | 33,310,000  | 33,310,000  | 33,310,000  | 33,310,000  | 99,930,000  |
|             |            |   | 2층     | 3          | 96,019,920  | 243,480,080 |            | 339,500,000 | 10,000,000 | 2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101,850,000 |
|             |            |   | 3~4층   | 6          | 96,019,920  | 247,480,080 |            | 343,500,000 | 10,000,000 | 24,350,000 | 34,350,000  | 34,350,000  | 34,350,000  | 34,350,000  | 34,350,000  | 34,350,000  | 103,050,000 |
|             |            |   | 5~9층   | 15         | 96,019,920  | 250,680,080 |            | 346,700,000 | 10,000,000 | 24,670,000 | 34,670,000  | 34,670,000  | 34,670,000  | 34,670,000  | 34,670,000  | 34,670,000  | 104,010,000 |
|             |            |   | 10층 이상 | 46         | 96,019,920  | 253,880,080 |            | 349,900,000 | 10,000,000 | 24,990,000 | 34,990,000  | 34,990,000  | 34,990,000  | 34,990,000  | 34,990,000  | 34,990,000  | 104,970,000 |
| 101         | 50         | 106동 5호<br>107동 5호  | 1층     | 1          | 114,842,160 | 297,688,945 | 29,768,895 | 442,300,000 | 10,000,000 | 34,230,000 | 44,230,000  | 44,230,000  | 44,230,000  | 44,230,000  | 44,230,000  | 44,230,000  | 132,690,000 |
|             |            |   | 2층     | 2          | 114,842,160 | 305,416,218 | 30,541,622 | 450,800,000 | 10,000,000 | 35,080,000 | 45,080,000  | 45,080,000  | 45,080,000  | 45,080,000  | 45,080,000  | 45,080,000  | 135,240,000 |
|             |            |   | 3~4층   | 4          | 114,842,160 | 310,325,309 | 31,032,531 | 456,200,000 | 10,000,000 | 35,620,000 | 45,620,000  | 45,620,000  | 45,620,000  | 45,620,000  | 45,620,000  | 45,620,000  | 136,860,000 |
|             |            |   | 5~9층   | 10         | 114,842,160 | 314,143,491 | 31,414,349 | 460,400,000 | 10,000,000 | 36,040,000 | 46,040,000  | 46,040,000  | 46,040,000  | 46,040,000  | 46,040,000  | 46,040,000  | 138,120,000 |
|             |            |   | 10층 이상 | 33         | 114,842,160 | 318,052,582 | 31,805,258 | 464,700,000 | 10,000,000 | 36,470,000 | 46,470,000  | 46,470,000  | 46,470,000  | 46,470,000  | 46,470,000  | 46,470,000  | 139,410,000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시행령 제60조)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정책, 관계법령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        | 075.9101 | 084.5134A | 084.9827B | 084.9913C | 101.6515 |
|---------------|----------|-----------|-----------|-----------|----------|
| 건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 75       | 84A       | 84B       | 84C       | 101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무상제공이며, 발코니 미확장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납부하지만, 입주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상호 협의 결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 비대상 건축물임에 따라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 설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공사시 이동통신설비의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            |                       | 75㎡ | 84㎡A | 84㎡B | 84㎡C | 101㎡ | 합 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3   | 15   | 1    | 1    | 0    | 20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   | 5    | 2    | 1    | 0    | 10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12   | 2    | 2    | 0    | 19  |
|               | 중소기업 근로자              | 7   | 15   | 2    | 1    | 0    | 25  |
|               | 장애인                   | 2   | 28   | 3    | 2    | 0    | 35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 17  | 75   | 10   | 7    | 5    | 114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5   | 23   | 3    | 2    | 1    | 34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공급 70% / 일반공급 30%   | 34  | 151  | 20   | 15   | 0    | 22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 70% / 일반공급 30%   | 12  | 53   | 7    | 5    | 0    | 77  |
| 합계            |                       | 85  | 377  | 50   | 36   | 6    | 55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li> </ul>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59 1246 2134 1422">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 외 지역 (포항시, 경상북도)</th> <th>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가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p>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 외 지역 (포항시, 경상북도) |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 외 지역 (포항시, 경상북도)  |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천기관

| 추천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애인(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없음              |
|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함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함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 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5명 이상          | 40 | -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4명             | 35 |   |
|                |     |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22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입주자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br>(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030,161원~<br>7,236,192원 | 7,094,206원~<br>8,513,046원  | 7,094,206원~<br>8,513,046원  | 7,393,648원~<br>8,872,376원  | 7,778,024원~<br>9,333,628원  | 8,162,400원~<br>9,794,87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br>(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030,161원~<br>8,442,224원 | 7,094,206원~<br>9,931,887원  | 7,094,206원~<br>9,931,887원  | 7,393,648원~<br>10,351,106원 | 7,778,024원~<br>10,889,232원 | 8,162,400원~<br>11,427,359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236,193원~<br>9,648,256원 | 8,513,047원~<br>11,350,728원 | 8,513,047원~<br>11,350,728원 | 8,872,377원~<br>11,829,835원 | 9,333,629원~<br>12,444,837원 | 9,794,880원~<br>13,059,838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7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우선공급<br>(기준소득, 70%) | 130% 이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10,111,430원                 | 10,611,119원                 |
| 생애최초 일반공급<br>(상위소득, 30%) | 130% 초과~160% 이하 | 7,839,209원~<br>9,648,256원   | 9,222,468원~<br>11,350,728원 | 9,222,468원~<br>11,350,728원 | 9,611,742원~<br>11,829,835원 | 10,111,431원~<br>12,444,837원 | 10,611,120원~<br>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합니다.
  -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 구 분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신청<br>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9.)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br/>[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및 외국인 포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포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br/>(해당 청약신청가능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도 포항시 거주자로 인정함)<br/>[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li> </ul>  |
| 청약신청<br>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단,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br/>(작은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li> <li>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li> <li>-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감액사유 시 변경 불필요)</li> </ul> </li> <li>•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6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6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ul> </li> <li>• 1순위 :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li> <li>-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li> </ul> </li> <li>• 2순위 :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li> </ul> <p>※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li> <li>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li> <li>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li>4)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5)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통장효력이 상실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ol> |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

| 구 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제(40%), 추첨제(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 전용면적 85㎡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 시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해당지역 (우선공급)      | 기타지역                      |
|------------------|---------------------------|
|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 외 지역(포항시, 경상북도) |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
| 전용면적 85㎡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02㎡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전용면적 135㎡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면적 변경 불필요(지역별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6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당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  |

|                       |   |
|-----------------------|---|
|                       |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 또는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b>총점</b>          | <b>84</b>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   |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단,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점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09월 0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09월 0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 업무수행 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1.11.08.(월)<br>청약Home(인터넷청약) 약 : 09: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br>• 은행창구 접수 불가 |
|      |                                    | 건본주택 : 10:00~14:00                              | • 포항 IPARK 건본주택 청약<br>-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br>(※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포항 IPARK 건본주택<br>-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11   |
| 일반공급 | 1순위                                | 2021.11.09.(화) 09: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br>• 청약통장 은행 창구 |
|      | 2순위                                | 2021.11.10.(수) 09: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

-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5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등·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 : 2021.11.16.(화)</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11.29.(월)~2021.12.03.(금) (10:00~16:00)</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건본주택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11 포항 아이파크)</li> </ul> </li> </ul> |
| 일반공급 | 1순위<br>2순위                         |   |  |

- ※ 특별공급 등·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등·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등·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등·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구 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1.11.16.(화) ~ 2021.11.25.(목)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11.1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6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6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6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6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6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li> </ul>   |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한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6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 장 소                                      |
|--|---|--|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br>(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2021.11.19.(금) ~ 2021.11.27.(토) 9일간 (10:00 ~ 16:00) | - 포항 IPARK 견본주택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11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 및 우편(등기) 제출 등의 방법을 병행 할수도 있습니다.(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 안내예정)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천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 <표1>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특별공급<br>공통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장소에 비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제출</li> <li>•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li> <li>•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 ○       |          | ①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⑧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⑨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⑩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①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 초본<br>(전체 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br>•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
|               |         | ○           | ⑤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br>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br>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⑦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br>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           | ③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br>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br>-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⑧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2>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③ 기타(가점 확인 서류)            | -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br>-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br>-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 ④ 소득증빙 서류<br>(아래 <표2>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                         | ○       |          | ⑤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br>(아래 <표3> 참고)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3>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 제3자<br>대리인 신청<br>시 추가사항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③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br>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③ 해당직장<br>④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br>발급되지 않는 자<br>(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br>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  |  |                          |
|--|--|--|--------------------------|
|  |  |  |                          |
|  | <b>법인사업자</b>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br>② 법인등기부등본   | ① 세무서<br>② 등기소           |
|  | <b>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b>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br>※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
|  | <b>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b>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br>② 세무서      |
|  | <b>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b>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해당 직장/세무서<br>② 해당 직장   |
|  | <b>국민기초생활수급자</b>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b>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b>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br>※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br>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 직장<br>② 국민연금공단      |
|  | <b>무직자</b>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장소 비치                  |
|  | <b>기타<br/>(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b>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br>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br>② 해당 직장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br>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br>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br>③ 해당직장/세무서 |
|--|---------------|--|--|-------------------------------|

■ <표4>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⑧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및<br>세대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br>생업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⑨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⑩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가점제<br>당첨자<br>및<br>예비<br>입주자<br>(가점제)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br>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br>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구 분                     | 서 류 유 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br>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br>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br>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녀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제3자<br>대리인 신청 시<br>추가사항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③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 자      |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br>•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등·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계약체결 기간  | 장 소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1.11.29.(월) ~ 2021.12.03.(금) 5일간<br>(10:00 ~ 16:00) | 포항 IPARK 견본주택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11 |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1차 계약금) | 우리은행  | 1005-704-129640 | 교보자산신탁(주)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공급계약체결 시 부여됨)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납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유형 |     | 구비 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본인<br>계약 시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본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대리<br>계약 시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위임장                    | 본인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청약 시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자는 분양계약서 작성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1.01.0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계약서 작성전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명의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 시 매건수별 인지세 부과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시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유상옵션)

(단위: 원, VAT 포함)

| 주택형 | 구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판매가격       | 제조사  |
|-----|-----------------|-------|--------------------------|------------|------|
| 75  | 일반 GRILL TYPE   | 전체(5) |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8,830,000  | 삼성전자 |
|     |                 | 전체(4)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팬트리형     | 7,460,000  |      |
|     |                 | 기본(2) | 거실+안방                    | 4,040,000  |      |
|     | 공기청정 GRILL TYPE | 전체(5) |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0,850,000 |      |
|     |                 | 전체(4)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팬트리형     | 9,070,000  |      |
|     |                 | 기본(2) | 거실+안방                    | 4,840,000  |      |
| 84A | 일반 GRILL TYPE   | 전체(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0,120,000 |      |
|     |                 | 전체(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팬트리형  | 8,750,000  |      |
|     |                 | 기본(3) | 거실+주방+안방                 | 5,510,000  |      |
|     | 공기청정 GRILL TYPE | 전체(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2,540,000 |      |
|     |                 | 전체(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팬트리형  | 10,770,000 |      |
|     |                 | 기본(3) | 거실+주방+안방                 | 6,720,000  |      |
| 84B | 일반 GRILL TYPE   | 전체(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0,120,000 |      |
|     |                 | 전체(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팬트리형  | 8,750,000  |      |
|     |                 | 기본(3) | 거실+주방+안방                 | 5,510,000  |      |
|     | 공기청정 GRILL TYPE | 전체(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2,540,000 |      |
|     |                 | 전체(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팬트리형  | 10,770,000 |      |
|     |                 | 기본(3) | 거실+주방+안방                 | 6,720,000  |      |
| 84C | 일반 GRILL TYPE   | 전체(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0,120,000 |      |
|     |                 | 전체(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팬트리형  | 8,750,000  |      |
|     |                 | 기본(3) | 거실+주방+안방                 | 5,510,000  |      |
|     | 공기청정 GRILL TYPE | 전체(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2,540,000 |      |
|     |                 | 전체(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팬트리형  | 10,770,000 |      |
|     |                 | 기본(3) | 거실+주방+안방                 | 6,720,000  |      |
| 101 | 일반 GRILL TYPE   | 전체(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0,540,000 |      |
|     |                 | 전체(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히든주방형 | 9,170,000  |      |
|     |                 | 기본(3) | 거실+주방+안방                 | 5,590,000  |      |
|     | 공기청정 GRILL TYPE | 전체(6)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2,960,000 |      |
|     |                 | 전체(5)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히든주방형 | 11,180,000 |      |
|     |                 | 기본(3) | 거실+주방+안방                 | 6,800,000  |      |

② 빌트인 가전제품(유상옵션)

(단위: 원, VAT 포함)

| 적용품목           | 구성 및 모델                             | 제조사  | 판매가격      | 비고       |
|----------------|-------------------------------------|------|-----------|----------|
| 빌트인 냉장고        | TBI냉장고(BRS665040SR)                 | 삼성   | 5,390,000 |          |
|                | TBI냉장고(BRS655140SR)                 | 삼성   | 7,200,000 |          |
|                | RR39T7695AP+RZ32T7665AP+RZ24T5660AP | 삼성   | 4,500,000 | 냉장+냉동+변온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RQ22K5(L/R)01EC                     | 삼성   | 1,250,000 | 패널포함     |
| 식기세척기          | DW60T7065SS                         | 삼성   | 850,000   |          |
|                | DWA-81R0D                           | SK매직 | 1,090,000 |          |
|                | DWA-76U5B                           | SK매직 | 780,000   |          |
| 전기쿡탑<br>(3구쿡탑) | 인덕션 2구+가스 1구(GRA-BI320H)            | SK매직 | 800,000   |          |
|                |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ERA-BT030)        | SK매직 | 800,000   |          |
|                | ALL 인덕션(IHR-BQ40)                   | SK매직 | 1,950,000 |          |

③ 기타 선택 제품(유상옵션)

(단위: 원, VAT 포함)

| 품목                  | 주택형 | 스타일  | 판매가격       | 비고     |
|---------------------|-----|--|------------|--------|
| 주방 특화<br>(사각싱크볼+수전) | 75  | 수납강화(알파룸)  | 2,680,000  |        |
|                     | 84A | 수납강화(알파룸)  | 3,290,000  |        |
|                     | 84B | 수납강화(알파룸)  | 2,250,000  |        |
|                     | 84C | 수납강화(알파룸)  | 2,280,000  |        |
|                     | 101 | 수납강화(알파룸)  | 9,620,000  |        |
| 주방 세라믹타일            | 75  | 스타일1,2 선택가능  | 6,670,000  |        |
|                     | 84A | 스타일1,2 선택가능  | 6,840,000  |        |
|                     | 84B | 스타일1,2 선택가능  | 6,820,000  |        |
|                     | 84C | 스타일1,2 선택가능  | 6,870,000  |        |
|                     | 101 | 스타일1,2 선택가능  | 6,500,000  |        |
|                     | 101 | 스타일1, 2선택가능(주방벽+상판, 수납강화(히든주방))  | 11,360,000 |        |
| 거실 아트월              | 75  | 스타일1,2 선택가능  | 6,040,000  |        |
|                     | 84A | 스타일1,2 선택가능  | 5,290,000  |        |
|                     | 84B | 스타일1,2 선택가능  | 5,770,000  |        |
|                     | 84C | 스타일1,2 선택가능  | 5,770,000  |        |
|                     | 101 | 스타일1,2 선택가능  | 6,190,000  |        |
| 환기 케어시스템            | 75  | 확장기본, 12개소   | 1,780,000  |        |
|                     | 84A | 확장기본, 14개소   | 2,070,000  |        |
|                     | 84B | 확장기본, 14개소   | 2,070,000  | 아이콘트롤스 |
|                     | 84C | 확장기본, 14개소   | 2,070,000  |        |
|                     | 101 | 확장기본, 17개소   | 2,420,000  |        |
| 조명옵션                | 75  | 거실우물천정라인등+커튼박스간접조명(거실,안방)+안방<br>조명+주방상부장하부조명+욕실장하부조명+UVA살균등<br>(조명옵션 선택시 거실, 안방 기본등 미설치) | 5,180,000  | 아이콘트롤스 |
|                     | 84A |  | 5,480,000  |        |
|                     | 84B |  | 5,480,000  |        |
|                     | 84C |  | 5,480,000  |        |
|                     | 101 |  | 6,250,000  |        |
| 드레스룸 고급화            | 101 | 스타일1,2 선택가능  | 8,600,000  |        |

※ 스타일 옵션제는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가격으로 적용 됩니다.(스타일 1은 Natural, 스타일2 는 Urban)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가전 및 기타 유상옵션 품목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정확한 일자, 추가선택 품목 및 금액 등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유상)품목의 계약은 사업주체인 교보자산신탁(주)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추가 품목계약 시 계약 가능기간 안내),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청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품목적용 및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적용 및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틸트엔턴창호는 턴 기능사용시(창호를 여닫이 식으로 열어서 사용할 시) 안전상의 문제로 일정한 각도이내로만(약 30도, 턴책 부속물 설치)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환기를 위해서는 틸트 기능(창호를 프로젝트창 식으로 위쪽으로 열리는 경우) 사용을 권장합니다. \*만약 90도 이상으로 턴 기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턴책을 제거할 경우) 창호의 처짐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틸트 기능 사용시 열고 닫을 때 손잡이 위치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180도 위치로 열고 닫기) 다른 방향으로(예 90도) 손잡이를 놓고 닫을 시에는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턴 기능 사용시 열고 닫을 때 손잡이 위치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90도 위치로 열고 닫기) 다른 방향으로(예 180도) 손잡이를 놓고 닫을 시에는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침실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한 실내로 소음,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 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합니다.
- 불박이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빌트인가전, 불박이가구류 등의 판매가격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위의 금액과 옵션선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가구 옵션, 마감 옵션, 조명 옵션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옵션 내 간접조명이 포함되는 경우 배관·배선·안정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간접조명의 크기와 깊이, 등기구 사양은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 발코니 확장

- 주택형 75, 84A, 84B, 84C, 101형 발코니 확장금액은 무상으로 제공 합니다.(부가세 포함)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전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비용(부가세 포함)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무상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주택형 75형(7,485,000원), 84A형(8,031,000원), 84B형(7,825,000원) 84C형(7,803,000원) 101형(9,298,000원) 이며,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함에 이는 무상 공급합니다.(부가세 포함)
-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됩니다.(입주자가 별도 시공할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9

##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허가 협의 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사업지 인근 신설 초등학교(가칭 용산초)에 배정 예정입니다(단, 본 사항은 포항시교육지원청의 계획으로 인해 향후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인근에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변전소가 존재하여 동배치상 일부동은 송전선로 및 송전탑, 변전소가 보일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 변전소의 존재를 충분히 현장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향후 건강권,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원, 공공용지, 완충녹지,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허가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건강권,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미분양 분 추가 판촉 및 할인 조건 포함)
- 본 아파트의 명칭, 브랜드로그,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조경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관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상품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미납시 2021.01.0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 입주전후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새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휘트니스센터,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또는 환기가 용이한 시설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주체에 따른 입주민들이 자체적 유지, 관리운영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소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커뮤니티센터 지붕, 105동 경로당 지붕, 106동 어린이집 지붕은 개인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옵션선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상가용 실외기가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는 소음이 발생하고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분리수거장은 동별 1개소씩 총 8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 ■ 홍보물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공급안내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 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 옵션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상옵션 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수납강화형, 히든주방형, 거실아트월 & 복도벽 세라믹판넬, 거실후면 시트판넬, 주방상판 & 벽 세라믹판넬, 드레스룸 고급 시스템선반, 사각싱크볼, 고급주방수전, 인덕션, 간접조명 및 일부 등기구 등은 별도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품목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석, 천연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며,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주방가구는 유상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형 주방가구의 배치와 구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대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공과 무관하며, 본공사 시에는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쿨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월패드,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스마트스위치, 에너지미터
  - 견본주택에는 75형, 84A형, 101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75형에 설치(침실1,2 통합형)된 유리벽과 슬라이딩 도어는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시공 설치되므로, 계약전 이를 반드시 확인후 선택 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현관출입구 중문[75형(2연동형), 84A,84B,84C,101형(3연동형)]은 시공자가 무상으로 시공 함으로 입주자가 별도 시공설치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식탁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준으로 시공 설치 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조경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학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재질,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에 석축 또는 옹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석축 또는 옹벽의 형태 및 재질, 높이 등은 실시공 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모형에 반영된 아파트 1층 출입구는(지상 정상 주동출입구, 필로티 진입 출입구) 주변 조경, 보행도로 등 시공계획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옥상면에 표현된 것은 식재가 아니며 인조잔디 또는 자갈패턴 등으로 마감예정입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식재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위치 및 종류, 수량, 포장 패턴 및 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축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일부 담장개방화 구간이 있는 경우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에 따라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는 단지 남측에 2개소(공동주택 주차, 근린생활시설 주차), 북측에 1개소 설치되며(공동주택 주차) 101동, 102동, 105동, 107동, 108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 진출입용 도로와 지하주차장 램프가 인접하여 있어 소음, 차량불빛 및 진동, 조망, 냄새, 매연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모형/배치도/분양 카드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상출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배치상 일부 동의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 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무인택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조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건축물의 축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또는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 통신 중계기,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지내 의장용 구조물, 이동통신중계기, 태양광발전설비 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동 통신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설치에 관하여 협의된 내용에 따라 설치해당사항은 없으나 본 공사시 이동통신설비의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 주동 옥상 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104동, 105동, 106동 저층 일부세대는 부대복리시설 이용소음 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배기덕트포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천창(TOP LIGHT) 상가,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호라인과 103동 6호라인, 104동 6호라인과 105동 1호라인은 주동 배치상 직각방향으로 인접해 있어 상호 외부창호에 의한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의 모형 등을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102동 1호라인과 103동 6호라인, 104동 6호라인과 105동 1호라인 세대의 전면 외부유리창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용 필름지가 부착되며 이로 인해 주변입면과 외관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에는 필름지 부착이 없음)
- 향후 용산지구 개발시 남측단지로 인해 101동, 102동 각 5호라인 일부세대에 한하여 절기에 따라 일조량이 적어질 수 있음으로 계약 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8동은 절기에 따라 일조량이 적어질 수 있음으로 계약 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 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 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과 엘(L)자형 주동배치 형태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특히, 코너형세대인 경우는(84B, 84C 타입) 다른 평형타입에 비해서 향, 통풍 등이 불리 할 수 있습니다.(예 주방공간, 다용도실공간)
- 분양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차에 따라 단지 서측과 남측은 일부 데크형태와 상가부분이 같이 계획되어 있고 차량출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데크 상부부분의 세대는 소음, 냄새 등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차에 따라 인접한 도로와 대지경계에는 경사구간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동측, 서측, 북측에는 조경석 쌓기, 옹벽 및 법면 등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 소음 등 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일부동은(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6동, 107동, 108동 주변)단지 대지경계 주변 및 도로와의 레벨경사를 고려하여 석축 또는 옹벽, 법면 등이 설치됩니다.
- 모형과 카탈로그에 표현된 데크와 상가부분의 마감은 본 시공시 특화입면계획에 따라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은 세대 내 방법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석중은 특성에 따라 시공 시 컬러가 일부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사이즈의 변경으로 코어 상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기계실,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위치한 오천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현장여건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골프장소음과 관련하여 시행사,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서측, 2차 사업지 서측에 인접한 송전탑(154kV신포항-포항TL, No. 5)은 준공시점에 영일만으로 남측으로 이전 설치될 예정입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현장여건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송전탑 및 고압전선 관련하여 시행사,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는 인근 해군 6전단의 비행안전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련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면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물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 구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면,배면,측면, 코어에 대한 줄눈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구조물은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환풍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인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우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는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가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위치,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풀옵션 선택세대는 천장형 냉매배관과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됩니다.(벽체 매립배관 없음)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어도 실내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냉매배관은 매립 또는 천장 공간 내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반세대(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는 거실(스탠드형)과 안방(벽걸이형) 2개소만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시 입주자 부담으로 냉매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옵션행사 시점에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환기유닛은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세대 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 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때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 타입 침실 커튼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천장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난간(유리, 투시형, 콘크리트난간)의 높이와 사시 설치 높이는 실시공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내부에 있는 슬라이딩창호인 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사 창호 종류, 높이, 컬러등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동빨래건조대 사용 시 다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101동, 104동 저층에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기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2개층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층에서 해당 동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당 단지는 택배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하1층 차로높이를 2.7m로 계획하였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추어 지하1층은 2.7m, 지하2층 2.3m로 계획하였습니다.
- 지하주차장(지하1층)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2.7m로 계획하였습니다.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1층 인근 및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본 공사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스기기(가스렌지 등)와 도시가스배관의 연결(별도 수수료 발생)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서비스지역 고객센터(관할 지자체 및 구청 문의)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스쿱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쿱탑 설치시 전기차단기, 전기+가스쿱탑제품(하이브리드) 설치시(가스,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쿱탑 옵션가격은 옵션선택시, 기본제품 사양에서 미설치되는 품목에 대해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침실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 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대내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밝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관련 사항

- 시스템에어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옵션행사 시점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풀옵션 선택세대는 천장형 냉매배관과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됩니다.(벽체 매립배관 없음)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 사항

-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단, 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내 공기감지센서(무선AP일체형)는 기본설치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마트주방패드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주방패드는 WIFI 전용 모델로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민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
- HDC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카카오펀드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무선 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세대에 카카오펀드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IPARK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주) 카카오펀드프라이즈의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펀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일부는 유상으로 제공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10

## 기타사항

### ■ 입주자 사전점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 입주예정일 : 2024년 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 2021년 2월2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입주예정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단지의 규모에 따라(500세대 이상 / 1,144세대)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지정한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발송)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3개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 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시니어휘트니스, 패밀리휘트니스, 맘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지하1층 주차장 : 출입구 유효높이는 2.7m, 차로의 높이는 2.7m, 주차구역의 높이는 2.1m
- 지하2층 주차장 : 출입구 유효높이는 2.3m, 차로의 높이는 2.3m, 주차구역의 높이는 2.1m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                                      | 적용   | 1등급   |
|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                                      | 적용   | 1등급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 조건 준수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의 1.12배 이상 제품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부속동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명명 : 포항 1차 IPARK 선곡공사<br>건축주 : 비르도스개발주식회사<br>준공일 : 2024.09<br>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유선리 360-13일영<br>층수 : 지하2층, 지상29층<br>면적 : 181,211.1542㎡<br>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br>설계자 : ㈜에이비엔건축사무소 | 인증번호 : G-SEED-P-2021-0610-6<br>인증기관 : (사)한국그린빌딩협회<br>유효기간 : 2021.06.18. ~ 서울신인빌(서울광역시) 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 및 승인 날짜지<br>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br>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5) [별표1]신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br>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br>환경부고시 제2021-66호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1년 06월 18일

(사)한국그린빌딩협회의 회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제1호제3항) 제13조제3항, 7. 21. >

1. 공동주택명: 포항 1차 IPARK 선곡공사  
 2. 신.건.차: 비르도스개발주식회사  
 3. 대.지.위.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유선리 360-13일영  
 4. 성.능.등.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      | 다. 환기 관련 등급           |     |
|-------------|------|-----------------------|-----|
| 1. 방음벽을 설치함 | ★★★★ | 20. 환기량 적지 않음         | -   |
| 2. 방음벽을 설치함 | ★★   | 21. 차압차압 적지 않음        | ★   |
| 3. 방음벽을 설치함 | ★★   | 22. 차압차압 적지 않음        | ★   |
| 4. 방음벽을 설치함 | ★    | 23. 차압차압 적지 않음        | ★   |
| 5. 방음벽을 설치함 |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차압을 저감함 | ★★★ |
|             |      | 25. 차압차압 적지 않음        | -   |
|             |      | 26. 차압차압 적지 않음        | ★★  |
|             |      | 27. 차압차압 적지 않음        | ★★  |

나. 구분 관련 등급

|             |      |
|-------------|------|
| 1. 내구성      | ★★★★ |
| 2. 기밀성      | ★★★  |
| 3. 주위환경 친화성 | ★    |
| 4. 부하용량 충분성 | ★★   |

다. 환기 관련 등급

|                 |      |
|-----------------|------|
| 1.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2.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3.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4.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5.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6.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7.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8.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9.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0.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1.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2.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3.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4.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5.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6.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7.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8.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 19. 기준 대비 설치 위치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사)한국그린빌딩협회의 회장

219mm×297mm(복합) 150g/m<sup>2</sup>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명명 : 포항 1차 IPARK 선곡공사<br>준공일 : 20240229<br>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유선리 360-13 일영<br>층 수 : 지하2층 / 지상29층<br>면적 : 181211.1542㎡<br>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br>설계자 : (주)에이비엔건축사무소 | 인증번호 : 21-주-에-14-0241<br>평가자 : 안상민<br>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br>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br>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종료일<br>인증등급 : 1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62.9

에너지효율등급

1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 난방 | 20.3                   | 43.9                | 9.3                                |
| 급탕 | 30.7                   | 35.5                | 7.2                                |
| 조명 | 11.9                   | 11.3                | 5.3                                |
| 합계 | 62.9                   | 94.1                | 23.4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종류, 가격, 조영, 연소,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되어 [ V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구분   | 등급                  |
|------|---------------------|
| 내진능력 | MMI 진도등급 VII-0.239g |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3항 및 제48조의 3, 2항에 따른 내진성능확보 여부와 내진능력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위와 같이 공개함

- 51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
| 제 01282021-101-0013800 호 | 283,011,26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상 호 |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국이에프티엔지니어링 | (주)건일씨엠     |        |
| 금 액 | 2,927,690,700 | 651,578,580    | 605,000,000 |        |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수탁자 겸 매도인)         | 사업주체(시행위탁자)                      | 시공사                  |
|--------|-------------------------|----------------------------------|----------------------|
| 상 호    | 교보자산신탁(주)               | 미르도시개발(주)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2번길 5-17, 204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
| 법인등록번호 | 110111-1617434          | 120111-1118670                   | 110111-6740008       |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미르도시개발(주)와 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교보자산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미르도시개발(주)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은 위탁자 미르도시개발(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미르도시개발(주)이 부담하며, “을”(매수인)은 교보자산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교보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미르도시개발(주)(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을”(매수인)은 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교보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교보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위탁자 미르도시개발(주)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교보자산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미르도시개발(주)와 매수인(“을”)간 또는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와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교보자산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미르도시개발(주)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을”(매수인)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이버 견본주택 : 포항 IPARK 홈페이지 (<https://www.i-park.com/pohang>)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11 (☎ 054-275-993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